Answers to the Questionnaires on Korean Cataloging Rules (Ⅱ)

「韓國目錄規則」에 관한 質疑에 대한 解答 (完)

—朴熙永 先生의 質疑를 中心으로—

張 一 世
本會專門委員會委員長

4. 標目의 選定

標目의 選定문제에 관하여 1月號(도협월보 1973年 1月號를 말한다. 以下同)에서 朴 熙永 先生이 지적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서 KCR(韓國目錄規則을 말한다. 以下同)의 결함중의 하나이다.

同一한 著書가 하나는 團體機關아래, 그리고 記述目錄아래에서 引用되어서 안될 것은 없으나 引用例로서 적절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시인하는 바이다.

단지, KCR 71面에서 例示한 「標準六法, 朴一慶 等編」은 記述目錄中에서 共著者의 記述方法을 설명하기 위하여 채택한 例이었으므로 標目의 選定과는 아무런 연관성을 갖지 아니하는 것이나 굳이 同一한 著書를 引用할 필요가 없는 곳에 引用하였다는 점에서 KCR 使用者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標目의 選定에 관하여는 KCR 51面 下段으로부터 9行에 지적한 바와 같이 "法令集이나 例規集을 編輯 또는 拔萃한 경우에는 編者를 標目으로 한다"라는 規定에 따라 「박, 일경, 편」으로 編者가 標目으로 選定된 것이다.

이와 같은 規定은 英美目錄規則[1](Anglo American Cataloging Rules 略稱 AACR)에서도 同一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 本文의 一部를 引用하면 "Under the editor, compiler, or title of a modern collection,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rule 5"라하여 AACR 第5條의 일반규정에 따라 標目을 選定토록 하고 있다.

물론 朴先生이 지적한 바와 같이 法令을 編者나 또는 書名, 그리고 또는 政府機關아래로 찾아야 할 것인지 망서리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즉, 어떤 곳을 찾아야 할지 잘 모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理由는 多樣한 圖書를 內容目錄에서 圖書內容의 性格에 따라 일일이 한데 묶어 표시할 수 없으므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어찌할 수 없이 索引을 活用하여야 할 수 밖에 없다.

AACR이 나오기 전의 ALA Rules를 보아도 KCR에서 느끼는 바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AACR에서는 그런 점에서 훨신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정확한 설명 위치를 알기 위하여는 결국 AACR에 있어서도 索引밖에는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標目의 選定문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筆者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종류의 도서, 例를 들면 朴先生이 例示한 「朴一慶 編 標準六法」에 있어서는, 目錄者의 見解에 따라 書名을 基本記入으로 選定하였다 하드래도 何等의 잘못이 없을 뿐 아니라 어느 規定에도 違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면 일견 矛循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것은 빠리의 目錄原則 會議에서 채택된 原則과도 합치하는 것이며, 前號의 「1 記入에 대한 문제」에서 筆者가 複數記入 문제를 기술한 理由도 여기에 있다.[2]

5. 標目의 記入形式

標目의 記入形式문제에서 朴先生은 共著者인 경우 「공저」표시를 어느 사람에게는 附記하고, 어느 사람에게는 附記하지 아니한 것인가를 問議하였다. 이 問議에서 「편」者의 「편」은 다 附記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매우 재미 있는 質問이다.

朴先生이 지적한 것과 같이 KCR 3面을 보면 第3條 共著書의 例에서 車洛勳, 鄭熙喆 共著인 商法大意를 볼 수 있는데, 보는 바와 같이 車洛勳이 基本記入으로 選定되었고, 鄭熙喆은 共著者로서 副記入되게 되어 있다.

共著書인 경우는 그중 어떤 한 사람이 基本記入으로 選定되는데(但, 共著者가 3人을 넘을 경우는 書名이 基本記入된다) 그 사람이 車氏이던 鄭氏이던 관계없이

1)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Chicago. 1967. p. 47.
2) 張一世, 「韓國目錄規制」에 관한 質疑에 대한 解答(上) 도협월보, Vol. 15, No. 4. 1974 4月號, p. 12.

「공저」라는 표시는 하지 않는 것이 慣例이고, 別記入으로 나아가는 人名에게만 「공저」라는 표시를 附記하게되어 있다.

그 理由는 副記入으로 나아가는 共著者나 基本記入으로 되어 있는 共著者나 하나도 다를 바 없으나, 가능한한 불필요한 표시를 아니하는 일반적인 목록규칙의 원칙에 따라 別記入으로 나아가는 共著者에만 「공저」의 표시를 하는 것 뿐이다.

그러나 編者라든가 飜譯者등과 같이 著者(※共著者도 著者임에 留意)와는 性格上 많은 뚜렷한 差異가 있는 것이므로 「편」 또는 「역」등은 그 사람이 수행한 機能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반드시 표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ALA Rules에 있어서나 또는 AACR에 있어서도 KCR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동일한 취급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편」 또는 「역」 표시에 있어서 그 앞에 오는 성명과의 구별을 위하여 콤마(,)가 있어야 하는데, 朴先生이 지적한 KCR 76面에서의 "원, 영의. 편."의 경우는 誤植이다. 그것은 KCR 7面, 18, 19, 20面의 例에서 보아도 알 수 있다.

다음은 外國의 團體名記入形式 문제이다. 朴先生이 例로 인용한 다음 두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코쿠피쓰 콕카아토쇼캉

日本色彩研究所

上記의 例中에서 처음에 인용한 것은 地名을 主標目으로 잡았을 경우이고, 다음 것은 固有名詞로서의 團體名을 標目으로 잡았을 경우이다.

外國의 政府刊行物을 目錄할 경우 圖書館에 따라 취급하는 方法에 差異가 있을 수 있다. 즉, 母國語(※日本의 경우 일본어로, 英美國일 경우는 英語로)로 표시하여 그에 따라 배열하는 圖書館도 있고, KCR에서 例示한 바와 같이 日本 政府刊行物을 모두 「일본」이라는 國名을 主標目으로 하고 發行機關名을 飜字表示하여서 副標目으로 하는 경우이다.

그것은 「일본」이라는 主標目아래 모든 日本의 政府機關名이 副標目으로 올 것이므로 한곳에 전부 모일 수 있다는 長點 때문이다.

그런데 日本을 「일본」이라고 우리말로 記入하고, 副標目에서 機關名을 飜字表示한 理由는, 첫째는 國家를 보통명사로 표시하여서 자료를 한곳에 모으기 위한 것이며, 機關名을 飜字表記한 것은 固有한 機關名이므로 飜字表記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人本人名을 역시 飜字表記하는 것과 同一한 理由에서이다.

日本色彩研究所의 경우는 단지 飜字表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것 뿐이지, 원칙적인 점에 있어서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 따라서 모든 固有名詞는 母國語의 發音을 우리말로 飜字表記하는 것이 原則이란 것만 명심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6. 副書名의 取扱문제

朴 先生이 提起한 다음 문제는 副書名의 取扱문제이다.

朴先生이 KCR의 여러문제에서 이것 저것을 引用하였는데, 그것을 모두 綜合하면 「, ; :」 (콤마, 세미콜론, 콜론)의 세가지 記號가 어떻게 區別되어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다.

일반적인 원칙은 言語學에서 사용되는 원칙 바로 그것이다.

먼저 콤마(,)에 대하여 論하기로 한다. Webster 辭典에 보면 콤마는 "punctuation mark, used especially as a mark of separation within the sentence"로 되어 있어서, 句讀點의 하나며, 그 文章 안에서의 區分을 위한 記號로서 쓰인다고 하였다.

우리들이 제일 많이 쓰는 句讀點의 하나가 콤마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별로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의 세미콜론(;)인데, 역시 Webster辭典을 보면 "a punctuation mark; used chiefly in a coordinating function between major sentence elements"로 되어 있는데, 역시 句讀點의 하나라는 점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同等 또는 同位, 同格을 표시하는 記號로서 세미콜론으로 區分되는 앞과 뒤의 書名이 同格으로서 뒷 部分書名이 앞의 書名을 부연하여 說明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朴先生이 例로서 引用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스코바의 안개; 소련 二重間諜의 手記」나 또는 「實記 朴烈評傳; 抗日思想의 燦然한 鬪爭記」에 있어서 모두 세미콜론 다음에 계속된 書名은 그 앞의 書名을 부연하여 說明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모스코바의 안개」 대신에 「소련 二重間諜의 手記」를 쓰거나 또는 「實記 朴烈評傳」 대신에 「抗日思想의 燦然한 鬪爭記」를 書名으로 채택한다 하여도 뜻을 알 수 있다. 뜻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本書名을 說明的으로 부연하고 있어서 더욱 뚜렷하게 뜻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세미콜론이 쓰인다.

콜론(:)은 "a punctuation mark: used chiefly to direct attention to matter that follows (as a les't, explanation, or quotation)으로 Webster에 나타나 있어서, 역시 句讀點의 하나인데, 다른 記號와 틀리는 점은 콜론 다음에 오는 것 즉, 條目으로 나누어 쓴 것

說明, 引用文 등에 특히 重點을 둔 것을 뜻한다.

朴先生이 引用한 例를 다시 여기에 引用한다면 「春園 李光洙 : 그의 生涯, 文學, 思想」 또는 「保健社會白書 : 國民保健과 社會福祉」 그리고 「(決定版, 素月全集) 못잊을 그 사람 : 新收錄詩, 感想, 書簡, 小說全載」 등에 있어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가 本書名만으로는 內容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으로서 條目 條目으로 더 부연하거나 說明이 필요한 것들이다. 「春園 李光洙」의 경우 「그의 生涯, 文學, 思想」 등으로 條目 條目이 內容을 열거하고 있으며, 「못잊을 그사람」의 경우는 「新收錄詩, 感想, 書簡, 小說全載」로 역시 條目 條目 列擧하고 있다.

위에서 간단히 설명한 바와 같이 句讀點이 文章에 따라 쓰여졌으므로 그 句讀點의 뜻만 이해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7. 卷次表示 문제

끝으로 朴先生이 提起한 卷次表示문제를 論하기로 한다.

卷次表示는 KCR의 記述目錄規則에 있어서나[3] AACR에 있어서나[4] 著者表示 다음에 記載하게 되어 있어서 記載位置에 관한한 아무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

그런데 朴先生이 提起한 문제는 書名 다음에 著者表示가 있은 후 卷次表示가 오는 경우와 著者表示가 없을 경우에 書名 다음에 계속하여 卷次表示가 오는 경우의 差異인데, 그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差異가 있을 수 없다. 朴先生은 아주 적절한 곳을 끄집어 내었는데 卷次表示는 獨立的인 記述事項의 하나이므로 著者表示의 있고 없고에 관계 없이 獨立的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따로서 KCR p. 79에 있는 武林學故叢論, 26集은 잘못이다. 역시 朴先生이 例示한 한국동식물도감, 제5권도 피리어드로 끊어야 하며, 식물편 다음에는 콜론이 피리어드 보다 더 적절한 句讀點임도 是認하는 바이다.

8. 맺는 말

맨 처음에서도 言及하였지만 KCR에 대하여 깊은 關心을 보여 주신 朴 熙永 先生님에게 다시 한번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첫 술에 배 부를 수 없다"는 格言과 같이 처음부터 完全한 目錄規則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朴先生님과 같이 關心을 가지는 분들의 끊임없는 思考가 더욱 完全한 目錄規則을 만들어 나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마치 금년은 KCR이 처음으로 制定된 해로부터 滿十年이 되는 해이고, 또 그동안 美國에서는 AACR이 出版되는 등 目錄規則에 있어서도 많은 發展을 하고 있어서 KCR의 改正問題를 目錄分科委員會에서도 진지하게 論議하고 있는 터에 朴先生의 적절한 質疑는 한층 더 目錄分委의 事業目標를 促進시켜주는 결과가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바이다.

사실상 KCR은 그 당시의 여러 가지 要件으로 인하여 만족스럽게 制定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고, 一貫性이 缺如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初創期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各級圖書館發展에 貢獻한 바도 그 나름대로 컸다고 할 수 있다.

하여간 專門委員會로서도 今年의 가장 큰 目標의 하나로서 目錄規則의 改正을 내 세우고 있으니만큼 關心을 가진 여러분들께서 한층 더 關心을 가지고 많은 忠告를 아끼지 아니할 때 보다 나은 目錄規則이 나타나게 될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本 協會 消息欄에 紹介되었으리라 생각하지만, 目錄分委에서는 보다 폭넓은 意見과 忠告를 廣範圍하게 수집하기 위하여 이미 關心을 표명하신 朴 熙永, 鄭 馳謨 및 李 載喆 諸氏를 特別委員으로 모시고 目錄規則改正을 위한 보다 具體的인 意見과 見解를 들은 바 있거니와 앞으로도 널리 門戶를 開放하고 關心있는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忠告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3) 韓國圖書館協會, 韓國目錄規制, 修正版, 서울, 1966. p.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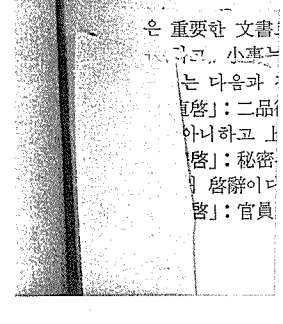
4)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North American Text. Chicago, 1967. p. 199.